

서 울 特 別 시

판 일 생 탈

예 규

발  
령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면부 11010-1809

시행일자 1993. 11. 9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설	
별부 담당관		
별제 개정	30	
기안	이종렬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개정규정발령

1.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 개정안 1부. 끝.

(제 2 안)

수 신 : 공보관

참 조 : 공보1담당관

제 목 : 시보개재

제 2 안 183 호

1. 별첨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테규 제 183 호 2부. 끝.

서 울 특 別 시 장

(제 3 안)

수 신 : 재개발과장

제 복 : 예규발령 통보

1. 재개 11150-732(93. 11. 5)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로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람.

첨부 : 서울특별시 예규 제 183 호(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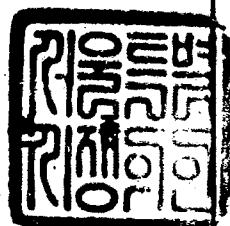
서 울 특 別 시 장

서울특별시 1993년 11월 15일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3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예규 제 1호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과 재개발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주입·자출·기금관리·기금운용·보고 및 결산등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월지정)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권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재개발과장으로 한다.

제3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기금출납공무원은 조례 제7조에 의한 기금수임을 징수·집징할 때에는 반드시 제1호시식의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징수부에 부재하고 고지서를 맡길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수임은 금융기관이 이자발생통보서에 의하여 징수결의하고 고지서 맡길을 생략한다.  
②착오·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징수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미수납액의 이월) 기금출납공무원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야 하며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조(지출방법) ① 계약에 의한 기금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 및 지출의사에 의하고, 일반적인 기금지출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의사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충납공무원은 현급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하여 행정원 계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함)은 다음 회계연도의 공공시설 설치 및 사업시행 목적 등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기금 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종합부
2. 수입부
3. 지출부
4. 지급명령발행부
5. 지출원인 행위부
6. 추산부
7. 기금배정부
8. 위탁금 관리대장
9. 용자금 관리대장

**제8조(기금용자 대상자)** 도시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에 의한  
기금의 용자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공사·법인으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2. 법 제11조에 의한 제3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① 제12조·법 제17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도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으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9조(용자형식)** 기금의 용자는 충시에 의한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용자계획 공고)** 시장은 기금용자 계획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용자신청  
20일전까지 시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용자신청 10일전까지 기금용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신청서류
4. 용자조건 및 상환방법
5. 기타 유의사항

**제11조(용자신청)** 용자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4호시식의 재개발사업기금  
용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계획 승인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사업비 내역서(건축물 및 공공시설 설치 관련비용과 용자금 사용계획 내역  
별도명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제12조(용자방법 및 위탁금융기관의 업무) ① 기금의 용자는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위탁용자는 시장과 금융기관이 제정한 재개발사업 기금 위탁·운용 협약서에 의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개발사업 기금수용업체관리카드를 작성·미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신청서 접수마감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재개발사업 기금·용자대상자 선정·통보서에 의하여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용자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회보관리하여야 한다.
- ④ 기금의 위탁금융기관은 제3항의 통보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용자대상자의 상환능력 등을 접보하여 용자여부를 결정하고, 용자에 따른 원리금의 기한내 상환에 책임을 지며, 용자대상자에 대한 채권의 확보등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한 용자대상자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 기간내 접보 의견서를 첨부하여 용자할 수 없음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탁금융기관은 제15조 제3항에 의한 시장의 통보가 있음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의 대상자에 대한 용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접보·결정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은 법규 및 인가된 사업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차별 용자금 누계액은 용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용자금액의 결정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용자에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용자 가능한 신청자 전원에게 분배하되, 그 기준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공공시설 설치비의 투자규모에 비례하여 산출한다. 이경우 용자규모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산식 =  $\frac{\text{신청자의 공공시설비 투자규모}}{\text{신청자 전원의 공공시설비 투자규모}} \times \text{용자 가능한 기금총액}$

4. 공공복직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차관제 등이나 기금특별사기 50퍼센트 이상 부자한 공시 또는 재개발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그룹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유지하고 그 규모는 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용자금의 한도액) 용자신청사에게 용자권을 주 있는 한도액은 재개발사업비 중 전축비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제14조(용자금의 상환) 용자금의 상환은 5년으로 하고 3년기자 2년 상환한다.

제15조(기금용자결정 취소등) ①시장은 기금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시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금용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착공계획일부터 2월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인가 또는 사업인가를 받았거나 기금용자를 받은 때
3.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지시에 칭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②시장은 개인 또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차감한 용자금(이자포함)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송인 받은 사업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때
4. 용자금을 재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시행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 다만,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 구성) ①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용자협의 등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무국장·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재정기획관으로 한다.

제17조(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제12조제6항에 의한 용자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개발사업기금운용에 대한 협의 요구서에 의하여 협의회에 의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해당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세입·세출의 보고) ① 시장은 세입·세출계산증명서를 작성하여 세입은 분기별, 세출은 매월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기금절산서와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회계 인도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기금의 수입, 지출·공사·물품구매의 계약행위와 창부·서식 등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회계사무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 부 록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이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수원의서

증재 호

출입공부원 계장 계	발의 고지서 발송 납입기한 정수부통기 고지서 번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	(인) (인) (인) (인)
19년도 재개발사업기금	(관)	(항)	(부)

일급

임원자주소성명

직

요

## 부록 제2호 서식

을체		제		제		제	
개장	폐장	출입명령권	19	19	제	제	제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발의		(인)	금		발의		(인)
원인행위부록기		(인)	합		처출부록기		(인)
주문		(인)	세항		처금부록기		(인)
답변		(인)			처금명령		(인)
질수		(인)	복		반대		(인)
불법증명부록기		(인)					
수입인지			일금				

본 계약에 있어서는 이인기재·사한을 출판함

주소

성명

(인)

상기금액 청구함

년 월 일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

(개최번호)

주	은행	서금
산 (인)		
별	통장번호	

주 : 계약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본서식에 의한다.  
(이하동단)

## 大韓銀行

支票		出納部	10月 支票開立日	支票	支票	出納部	
계정	과정	출납영업관	支票開立書	支票	支票	出納部	
발행		(인) 銀		支票	支票	(인)	
원인행위부 기		(인) 行		支票開立 印鑑	支票開立 印鑑	(인)	
개인		(인) 세행		支票開立 印鑑	支票開立 印鑑	(인)	
정수		(인) 銀		支票開立 印鑑	支票開立 印鑑	支票開立 印鑑	
수입인지		일련					
적요							
제주	주소	상호	상호	상호	상호	상호	
입수인	상기 금액을 현수함					10년 1월 1일	(인)
주 산 필 (인)							

주. 전도자금출납원이 전도자금을 지급할 때 사용할 지출결의서는 본 시식에 준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재개발사업기금 융자금 신청서

○ 신청자 : . 지구명

. 주 소

. 대표자

○ 신청금액 : 원

원정

W

○ 신급 회망점포

도시재개발법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기금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계획 승인서 서면  
2. 정관 또는 규약  
3. 사업비내역서 (건축물 및 공공시설 설치 권리비용과 융자금 사용계획  
내역 별도명시)  
4. 기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재개발사업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

지 구 명						전화번호
업 체 명						
주 소						
건축 현황	사업비	시행면적 (㎡)	건축면적 (㎡)	총 수	용 토	비 고
용자 내용	용자종목	대출일자	상환기간	대출금리	용자금용도	취급점포
			자: 자:	년 %		

상 환 실 칙

회수	년 월 일	상환금	비 고	회수	년 월 일	상환금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처리기간  
15일

재개발사업기금용자대상자신청·통보서

주	① 지구명	② 전화번호		
천	③ 시행자명			
인	④ 주 소			
⑤ 자격 요건				
추천	기금 용도	⑥ 용자신청액	⑦ 용자수락액	⑧ 기금집행
내용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기금 용자대상자를 선정·통보합니다.

19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은행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 재개발사업기금운용에대한협의요구서

건 명

위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 첨부서류

1. 의견서 1부
  2. 신청서 각 1부
  3. 기타 ( )
- 1). 증.

서 울 특 별 시 장

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협의회 귀중

(별지 제8호서식)

## 협의서

진명 :

재개발사업기금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음.

### 협의내용

협의사항	협의의견	비고

19년 4월 1일

위원장	(인)
위원	(인)

##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개정

### 1. 개정사유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의 개정에 따른 보완과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서 도시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금의 활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기금운용계획수립의 합리화를 위하여 재개발사업기금운용회의에서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 나. 기금계리에 필요한 장부·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신설함(안 제7조).
- 다. 재개발사업을 위한 민주단체통에 대한 보조는 일반행정비로 차감사행하지 않도록 하자함.
- 라. 재개발사업조례중 용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용지별법 및 임대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함(안 제12조).
- 마. 기금용자의 공정성·합리성을 기하고자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회의 위원을 국장급으로,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6조).
- 바. 세원·세율·보고기간을 권리법규에 맞도록 함(안 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률 : 도시재개발법·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
- 나. 예산조치 : 법도로적 필요없음
- 다. 합의 : 법도로적 필요없음

# 예 부 빌 령

## 기관 기호 및 수신처 기호 규정 중 개정규정

사업소 직제판면 조례 및 공사설치조례를

기구의 배치·신설에 따른 기관기호 및

수신처 기호변경

112

이행일자 1994. 1. 21.

(경유) (제 1 앤)

수신 내부 결재

합포

## 특 별 시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662

금	시	장
준		
기획관리실장 천경		
법무 담당관		
법제제장		
기안	이종범	합포

*천경*

제목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 기호 규정 중 개정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 기호 규정 중 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 예규안 1부, 풀.

(제 2 앤)

수신 공보관

합포 공보 1 담당관

제목 시보 게재

584 호

1.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 기호 규정 중 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584호 2부, 풀.

## 서 울 특 별 시 장

(제 3 앤)

수신 시민과장

제목 예규발령 통보

1. 시민 12311-63(94.1.21)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 기호 규정 중 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로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584호 (생략)



서 울 특 별 시 장